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지정 제도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임원 인사에서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28호, 2020. 3.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체적인 구분기준을 정하고, 타당성재조사를 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안 제7조 및 제7조의2)

- 1) 기획재정부장관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 수입액이 30억원 이상인 면서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는 공기업으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타공공기관을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경우 등으로 유형화하여 구분함.

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후보자 추천기한(안 제23조제1항, 안 제23조제2항 신설)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 임원의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2)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임원후보자를 다시 공개모집해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와 협의하여 임원후보자 추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타당성재조사 대상 사업(안 제25조의4 신설)

기관장은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 중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이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

성조사를 거친 당시에 비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사업 등에 대해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4. 29. ~ 6.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5조제2항 및 법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에서”를 “제5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및 이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을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에”를 “제5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에”로,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의”를 “법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및 이 영 제7조제1항제2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정함에 있어”를 “산정할 때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5조제1항 및 부칙 제3조제2항”을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 제5조제3항제1호가목”을 “법 제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으로, “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는 기준으로서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직원 정원: 5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30억원 이상
3.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②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공기업을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으로서 법 제5조제3항에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③ 공기업을 세분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기준으로서 법 제5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2.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100분의 85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의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
2.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공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기관
나. 법무·준사법 업무, 합의·조정 업무나 국제규범이 적용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다.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고려해 자율경영 필요성이 높은 기관
라.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이 높은 기관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3.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제10조제1호 중 “제7조의2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을 “제7조의2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을 포함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를 “만료 2개월 전(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인해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로, “구성하여야”를 “구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선임하여야”를 “선임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임원후보자를 복수(複數)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아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공개모집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와 협의해 후보자 추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감사후보자 추천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임명 예정인 공공기관이 관장하는 사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했을 것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25조의4에서”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재난예방을 위하여”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예방을 위해”로 한다.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타당성재조사) ①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해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제2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규모(이하 이 호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라 한다)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2. 법 제40조제3항 및 이 영 제25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이

조에서 “예비타당성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 중인 사업

3.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 중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당시의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에 비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사업

4.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 중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치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당시에 비해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요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기관장이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등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3. 재난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임원의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인해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임원의 임기 만료 외의 사유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총수입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u>법 제5조제2항 및 법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에서</u> “총수입액”이란 <u>당해</u>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제2조(총수입액) ----- ----- ----- 제 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가목 및 이 영 제7조제1항제2호 에서 ----- -- <u>해당</u> ----- ----- ----- ----- ----- -----.		
제5조(자체수입액) <u>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에서</u> “자체수입액”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5조(자체수입액) <u>법 제5조제3항</u> -- <u>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u> --- ----- ----- ----- ----- ----- -----.		
1.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 <u>당해</u>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수입으로서		1. ----- <u>해당</u> ----- ----- -----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기타사업 수입액 : <u>당해</u> 기관 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생 략) 제6조(총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4조제1항제2호,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 1호가목에 따른 총수입액,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정부지원액,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 항제1호가목의 자체수입액(이 하 “총수입액 등”이라 한다)은 최근 3개년간의 결산기준 재무 제표를 기초로 산정하며, 3개년 평균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총수입액 등을 <u>산정함에 있어</u> 재무제표가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작성된 기관 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재무 제표를 활용하여 총수입액 등을 산정하며,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u>당해</u> 기 관의 예산을 기초로 하여 이에	----- 2. ----- <u>해당</u> ----- ----- ----- ----- ----- 3. (현행과 같음) 제6조(총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등) ①----- <u>제</u> <u>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u> <u>가목 및 이 영 제7조제1항제2호</u> <u>에</u> ----- <u>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u> <u>항제1호가목의</u> ----- ----- ----- ----- -----. ②----- <u>산정할 때에</u> ----- ----- ----- ----- ----- ----- <u>해당</u> ----- -----
---	---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산정한다.

③ (생략)

④ 법 제5조제1항 및 부칙 제3조제2항, 이 영 제21조 및 제22조를 적용할 때 직원 정원은 공공기관 지정 또는 임원 임면 직전연도 연말기준 직원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직전연도 연말기준 직원 정원이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⑤ 법 제5조제3항제1호가목, 제18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21조제2항 단서와 이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자산규모는 최근연도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

-----.

-----.

⑤ 법 제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 같은 조 제3항-----

-----.

-- 않은 -----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예산
을 기초로 산정한다.

⑥·⑦ (생략)

제7조(시장형 공기업의 지정기준)
법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85를 말한다.

-----.

⑥·⑦ (현행과 같음)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
정기준) ① 공공기관을 공기업
·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는 기
준으로서 법 제5조제1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직원 정원: 5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30억원 이상

3.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②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공기
업을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으
로서 법 제5조제3항에서 “총수
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 이상”이란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분
의 1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③ 공기업을 세분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기준으로
서 법 제5조제4항제1호가목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제7조의2(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3.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2.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100분의 85

제7조의2(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서울대학교치과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
관

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
울대학교치과병원

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
료기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의 관리체계가 구축되
어 있는 기관

2.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으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공공기관이 출연 또는 출
자하여 설립한 교육기관

나. 법무·준사법 업무, 합의
·조정 업무나 국제규범이
적용되는 업무 등을 수행
하는 기관

다.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고
려해 자율경영 필요성이
높은 기관

라.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
로 하는 기관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
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이 높은 기
관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8
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
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
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제10조(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법 제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7조의2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 8. (생략)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 ⑤ (생략)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사항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의록 내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제10조(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

1. 제7조의2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2. ~ 8.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

-----.

⑥ 운영위원회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을 포함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한

제23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략)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

다.

제23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만료 2개월 전(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인해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
----- 구성해야 -----.

② 추천위원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임원후보자를 복수(複數)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아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공개모집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와 협의해 후보자 추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 선

임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 ⑥ (생략)

<신설>

임해야 ----. ---- 해당 ----

-----.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23조의2(감사후보자 추천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① 공
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
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법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
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
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③ (생략)
④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요

다.

1. 임명 예정인 공공기관이 관
장하는 사무와 관련된 분야에
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을 것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
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
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수사
· 법무, 예산·회계, 조사·기
획·평가 등의 업무를 1년 이
상 담당했을 것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① --
----- 인
조 및 제25조의4에서 -----

----- 신청해야 -----.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

<신 설>

제25조의4(타당성 재조사) ①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은 그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 재조사”라 한다)해야 한
다.

– 23 –

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
액의 합계액이 제25조의3제1
항 각 호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는 규모(이
하 이 호에서 “예비타당성조
사 대상 규모”라 한다)에 미달
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
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
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2. 법 제40조제3항 및 이 영 제25
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이하 이 조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
고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 중
인 사업

3.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
중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
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
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당시의 토지 등의 손실
보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에
비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사업

4.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
중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치
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당
시에 비해 100분의 30 이상 감
소한 사업

5.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요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
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기관
장이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한 사업

② 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를 거쳐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
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
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등 타당성재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되는 사업의 경우

3. 재난예방·복구 지원 또는

	<u>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15 - 5511, 5515